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18년 11월 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합의하였다.

제 1 항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항 연락기관

1. 협정 제1조제1항바호와 제20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NPS)

나. 아르헨티나에서는,
국가사회보장청(ANSES)

2.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 3 항 가입증명서

1.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가 법령이 협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그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사용자, 근로자 또는 독립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그 근로자 또는 독립근로자가 그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적용된다는 것과 유효한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그 근로자 또는 독립근로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강제가입에 관한 국가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항 제1호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이 증명서 1부를 그 근로자 또는 독립근로자 및 그 근로자의 사용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3. 협정 제8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한쪽 계약당사자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로 파견되는 경우,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근로자와 그/그녀의 피부양자가 입원비를 포함하여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근로자가 근로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이 항 제1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4 항

청구

1. 청구서를 접수한 실무기관은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자와 그/그녀의 가족 구성원에 관한 개인 정보를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포함한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실무기관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3. 청구서를 접수한 연락기관은 요청된 급여에 대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청구자의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 가능한 모든 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4.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언급된 청구서 및 서류에 추가하여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확인된 가입기간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기간을 표시하는 서식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송부한다.
5.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 후에 청구자의 수급권을 결정하고, 청구자와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확인된 기간과 그 결정을 통보한다.
6. 청구서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양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된 모든 서식은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로 만들어지며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작성된다.
7. 연락기관은 협정의 적용에 있어 관련된 실무기관 간의 협조와 정보교환을 담당한다.

제 5 항

급여의 지급

양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각자의 법령에서 설정한 방식에 따라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제 6 항

행정 협조

1. 협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 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 비용은 상환되지 않는다. 다른 비용의 상환은 양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청구자 또는 수급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 정보와 서류를 다른 쪽 연락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3.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자 또는 수급자로 하여금 의료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검진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이 검진의 수행을 주선한다.
4.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발생 비용의 세부 내역서를 접수한 경우, 이 항 제3호의 적용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게 상환한다.

5. 각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협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른 쪽 연락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망, 주소 및 혼인상태의 변동 또는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정보 교환을 위한 세부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된다.

제 7 항

통계의 교환

양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항에 따라 각 연락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각 실무기관이 지급한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는 급여의 유형별로 수급자의 수, 급여의 총 지급 건수 및 총액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교환 절차는 양쪽 연락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

제 8 항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제 9 항

추가 규정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양국의 각 법령의 틀 내에서만 이행된다.

각각의 날짜와 장소에서 모두 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를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의
인적자본부를 대표하여

날짜 :

날짜 :

장소 : 한국, 세종

장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